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599

발의연월일: 2024. 10. 7.

발 의 자: 박홍배 · 이기헌 · 강득구

김태선 • 박민규 • 정진욱

김주영 · 이수진 · 이재정

김현정 • 박 정 • 백승아

김 윤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2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-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 를 멈추고 회복 추세로 전환 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부와 사회 전 구성원의 실천과 협력이 제시되고 있음.

그리하여 쿤밍-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'모든 집단의 공평한 접근과 참여 보장', '공평한 의사결정 보장' 등의 목표가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수립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('24~'28)에도 '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', '지자체 전략 수립·이행 확대' 등의 목표가 설정되었음. 그러나 지자체는 국가전략 이행의 주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략 수립 및 이행이 미비하며 국가전략과의 연계가미흡한 상황임.

이에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전략 수립 의무화 및 이행을 위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· 관리기관인 국가생물다양성센터가 이를 지원하여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(제2장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장에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2(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·시행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 다)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 여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,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시·도지사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공고하여야 하며,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환경부장관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·시행 및 변경, 제출·공고,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8조의3(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의 이행상황 점검)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,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 다.
 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개선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
- 4. 국가생물다양성전략, 시행계획 또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·시행 또는 이행현황 점검 등에 필요한 지원

- 5.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교육·홍보, 그 밖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,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
- 6. 국가 및 지역별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의 개발 •분석•검증•작성•관리

제18조제2항 전단 중 "장에게"를 "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장은"을 "장 또는 시·도지사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8조의2(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
	수립·시행) ① 특별시장·광
	역시장 • 특별자치시장 • 도지사
	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
	도지사"라 한다)는 국가생물다
	양성전략 및 관할 구역의 지역
	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생
	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
	·시행하여야 한다.
	② 시・도지사는 지역생물다양
	성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
	는 경우 지역주민, 관계 전문가
	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	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
	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
	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	③ 시・도지사는 지역생물다양
	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
	우 즉시 공고하여야 하며, 이를
	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
	<u>다.</u>
	성전략 수립 및 이행을 촉진하

<신 설>

- 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·시행 및 변경, 제출· 공고,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의3(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의 이행상황 점검) ① 환경부 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,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.
 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

제17조(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 저영 등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수 있다.
1. ~ 6. (생략) <신 설>

<u>7.</u> (생 략)

②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·관리 및 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

	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	중
	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	지
	사에게 개선 의견을 제시할	<u>수</u>
	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	기
	관의 장, 시·도지사는 특별	<u>한</u>
	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	의
	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	<u>한</u>
	<u>다.</u>	
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	<u>규</u>
	정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	<u>관</u>
	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	령
	으로 정한다.	
4]	17조(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	운
	영 등) ①	
	1. ~ 6. (현행과 같음)	
	7.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	행
	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	
	<u>8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	
	②	

행하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신 설>

<u>4.</u> (생 략)

- ③ ~ ⑤ (생 략)
- 제18조(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 체계 구축·운영 등) ① (생략)
 -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<u>장에게</u>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소관 분야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국가생물다양성전략, 시행계 획 또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의 수립·시행 또는 이행현 황 점검 등에 필요한 지원
- 5.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교육・홍보, 그 밖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, 인식 제고 및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
- 6. 국가 및 지역별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각종 정보 및 통 계의 개발·분석·검증·작 성·관리
- 7. (현행 제4호와 같음)
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 제18조(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 체계 구축·운영 등) ① (현행 과 같음)

(2)			
<u>장</u>	또는 /	시・도지시	<u> </u>
<u>게</u>			

계 중앙행정기관의 <u>장은</u> 특별	
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	<u>장 또는 시·도지사는</u>
야 한다.	
	<u>.</u>